

KOREAN

Doing Business in Australia:

A Comprehensive Guide

2025



hhlaw.com.au

호주는 견실한 경제, 정치적 안전성, 숙련된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기업 활동과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기에 역동적이면서도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우호적인 조세 정책, 성장하는 내수 수요,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한 뛰어난 적응력을 바탕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꾸준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H & H Lawyers는 호주 내 해외 투자 및 비즈니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고도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당사는 특히 복잡한 국제 비즈니스 법률 및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정보에 기반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H&H Lawyers

SYDNEY | MELBOURNE

시드니와 멜버른 오피스를 통해, 호주 내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규 회사 설립, 투자 구조 설계, 규제 요건 대응 등 어떠한 분야에서도, 당사 변호사들은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H & H Lawyers는 해외 고객이 직면한 특유의 법적 과제와 기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귀하의 호주 시장 내 성공적 진출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주 시장에서의 투자 기회 발굴과 확장을 위해, 당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Disclaimer: This guide provides general information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as legal advice. Professional legal counsel should be sought for specific circumstances and transactions.

Index | Contents

법체계 개요

사업 구조

외국인 투자 정책

기업 지배구조

국제 무역

은행 및 금융

고용 및 노동법

이민

조세

부동산

경쟁 및 소비자법

투자 펀드

분쟁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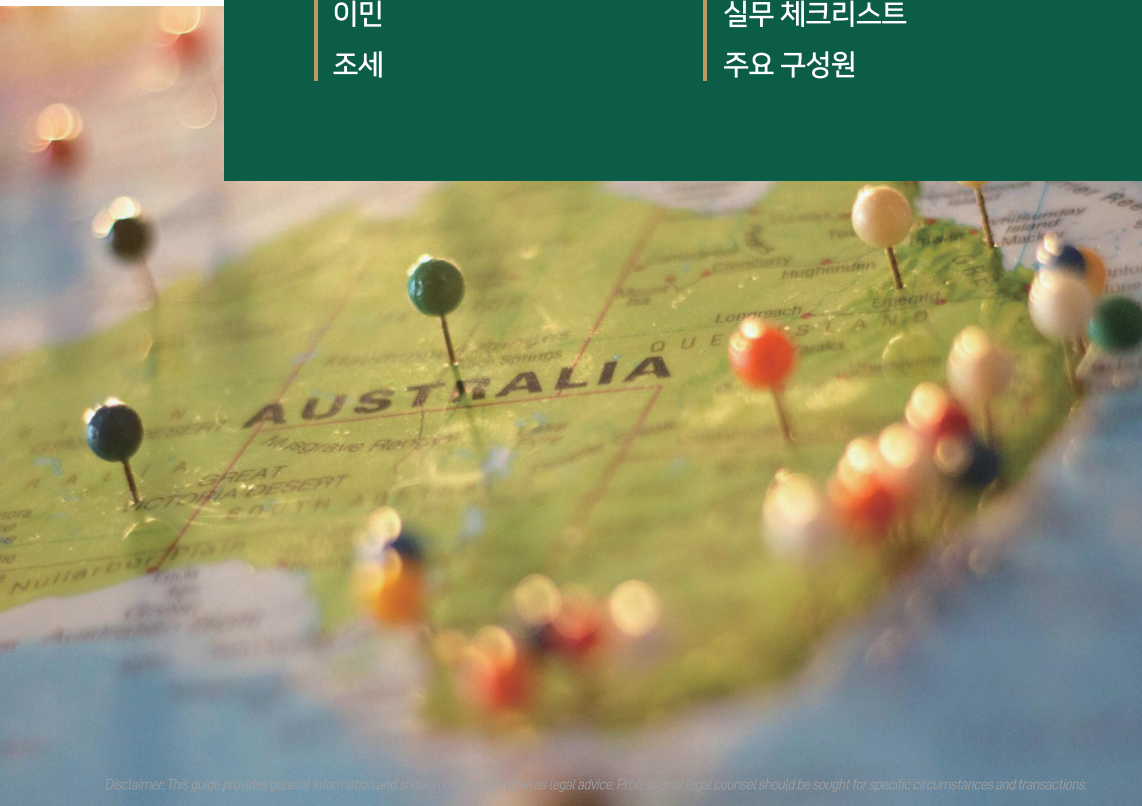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사이버보안

지식재산권 보호

실무 체크리스트

주요 구성원





법체계 개요

Legal System

호주의 법체계는 비즈니스와 투자 활동의 근간을 이루며, 성문법보다 판례법(case law)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영미법(Common Law)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조건을 비교적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주 법은 계약 내용에 광범위한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주요 법률 고려사항

• 집행 가능성 (Enforceability Issues)

채무불이행에 대해 일정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조항은 집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경쟁법을 위반하거나 과도한 영업 제한을 부과하는 합의 또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정 권리의 포기나 소송 제기 금지(no-sue) 약정 역시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주요 법리 (Legal Principles)

계약의 집행 가능성은 다양한 법적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권의 소멸시효, 파산 절차 중 권리 행사 제한, 그리고 진술보증(representation) 및 신뢰 (reliance)에 관한 법리가 이에 포함됩니다.

• 담보권 (Security Interests)

자산에 대한 담보권 집행은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2009(Cth)*에 따른 등록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계약 (Contracts)

서면 계약은 법적으로 필수 요건은 아니나, 분쟁 예방을 위해 작성이 권장됩니다. 호주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비엔나 협약) 당사국으로, 국제 물품 매매계약에 통일된 규칙을 적용합니다. 다만, 당사자들은 계약을 통해 해당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호주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합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권리 집행

계약 또는 기타 법률상 권리와 구제수단은 호주 사법제도 내에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 각 주(state)와 준주(territory)는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 법원인 대법원 (Supreme Court)과 항소법원 (Court of Appeal)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연방법원 체계(Federal Court System)가 존재하며, 호주 고등법원(High Court of Australia)이 주(state)와 연방을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최종 항소심으로서 최고 사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표적인 구제수단으로는 손해배상(Damages), 금지명령(Injunction), 재산 압류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법원은 본안 심 전 단계에서 당사자 간 조정 (mediation)을 거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This guide provides general information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as legal advice. Professional legal counsel should be sought for specific circumstances and transactions.

사업 구조

Business Structures

호주 투자를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구조가 있으며, 외국 법인의 자회사와 지점, 현지 법인 설립, 프랜차이즈, 파트너십, 합작 투자, 개인사업자(individual ownership), 대리점(agency), 신탁(trust) 등이 포함됩니다.

각 사업 구조는 회사법(the Corporations Act 2001(Cth))에 따라 규제 · 회계 · 세무 · 법률 요건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자회사와 지점

외국 회사는 일반적으로 자회사(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점(모회사와 종속관계)을 개설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자회사 설립할 경우 최소 한 명의 호주 거주 이사(Australian resident director)를 선임해야 하는 반면, 지점은 별도의 이사 선임 요건이 없습니다.

회사 설립

호주 회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

- 유한책임회사(Limited by shares)로 공개회사(Public) 및 비공개회사(Proprietary) 형태: 전체 등록 기업의 약 98%
- 보증한도회사(Limited by guarantee)
- 무한책임회사(Unlimited company)로 공개회사 (Public) 및 비공개회사(Proprietary) 형태
- 무한책임회사(No-liability company)

비공개회사는 공시 의무가 비교적 완화되어 있으나, 공모를 통한 자본 조달은 제한됩니다. 구성원은 최소 한 명이 필요하며, 직원이 아닌 구성원은 최대 50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개회사는 구성원 수에 제한이 없고, 공모를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비공개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소규모 비공개 회사는 ASIC의 요구, 구성원 요청 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모회사의 통제를 받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는 반드시 ASIC에 등록해야 하며, 회사명에 'Limited(Ltd)' 혹은 'Proprietary(Pty)'를 포함해야 합니다. 등록 후에는 고유한 호주회사번호(ACN)가 부여되고, 세무 목적을 위해 별도로 호주사업자번호(ABN)를 신청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와 유통 | Franchises and Distribution

유통 계약은 일반적으로 특정 영업 구역에 대해 '단독(sole)' 또는 '독점(exclusive)' 유통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체결됩니다. 이는 단일 사업자가 해당 구역을 전담해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통업자의 마진인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시장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십 | Business Partnerships

파트너십은 두 명 이상의 당사자가 영리 목적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체결하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관계입니다. 파트너십은 별도의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파트너들은 수익과 손실을 공동 및 개별적으로 부담하며, 파트너십의 채무와 의무에 대해서도 연대 및 개별 책임을 부담합니다.

합작 투자 | Joint Ventures

합작 투자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가 각자의 독립된 법인 지위를 유지한 채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합작 투자 계약은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며, 파트너십으로 간주될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세무상 불이익과 법적 책임을 최소화합니다. 이익 배분은 각 당사자가 합의한 참여 지분 비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대안적으로 별도의 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지분율에 따라 주식을 보유하고 주주 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을 통해 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를 규율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참여자들이 유한책임회사 주주로서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 Individual Ownership

개인사업자는 한 개인이 사업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형태로, 소유자와 사업체 사이에 법적 구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발생한 모든 이익을 얻는 반면, 모든 손실·채무·의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큰 위험 부담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대리점 | Agency

대리점 계약(Agency agreement)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거래나 법적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대리관계에는 본인-대리인, 본인-제3자, 대리인-제3자라는 세 가지 법적 관계가 존재합니다. 제3자에 대한 본인의 식별 여부에 따라, 제3자는 계약 위반 시 본인 또는 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본인 역시 계약을 위반한 제3자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고, 본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비밀 이익을 취하지 않고, 기밀 유지의무를 준수하며, 거래가 본인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본인은 대리인에게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승인된 비용 또는 채무를 대리인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신탁 | Trusts

신탁은 수탁자가 수익자 또는 특정 법적 목적을 위해 재산을 보유하는 법적 구조입니다. 재산에 대한 실질적 이익은 수탁자가 아닌 수익자 또는 지정된 목적에 귀속됩니다. 수탁자는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신의성실 의무를 부담합니다. 기업 운영 또한 신탁 구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대개 비공개회사)는 사업 자산을 보유하고, 수익자를 위해 영업 활동을 수행합니다.

외국인 투자 정책

Foreign Investment Policy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는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FATA)에 따라 외국인 투자 제안을 검토 · 심의합니다.

FIRB는 재무장관(Treasurer)에게 자문을 제공하며, 최종 승인 여부는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을 고려하여 재무장관이 결정합니다.

금액 기준 | Monetary Thresholds

투자금액 기준은 투자자의 국적(협정국 여부) 및 자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대한민국, 미국, 일본, 칠레 등)의 경우, 비체결국보다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기준:

투자 유형	FTA 체결국	기타 국가
기업 인수	AUD \$1,455 백만	AUD \$321 백만
농업 관련 기업	AUD \$1,455 백만	AUD \$72 백만
농지	AUD \$1,455 백만	AUD \$72 백만
상업용 부동산	AUD \$1,455 백만	AUD \$72 백만
주거용 부동산	기준 없음	기준 없음

※기준 금액은 매년 지수에 따라 조정되며, 일부 산업의 경우 투자 금액과 무관하게 FIRB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별 제한 | Sector-Specific Restrictions

- 핵심 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 통신, 에너지, 수도, 항만, 데이터 저장시설 등은 강화된 심의 및 조건 부과 대상입니다. 핵심 인프라 자산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 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FIRB 승인이 필요합니다.
- 미디어(Media): 방송, 라디오, 신문 등 미디어 자산은 외국인 지분 제한이 적용되며, 누적 외국인 지분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국가 안보 민감 분야(Sensitive Sectors): 국방, 운송, 통신, 데이터 처리 등은 국가안보 관점에서 심층 검토 대상이 되며, 이러한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국가이익 평가 시 국가안보 요인이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 금융 부문(Financial Sector): 은행, 보험사, 주요 금융 인프라 기업 등에 대한 투자는 FIRB 승인 외에 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호주 건전성감독청)의 별도 승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심사 기간 | Application Process and Timing

FIRB 신청은 거래 실행 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장관은 통상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나, 복잡한 사안의 경우 최대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심사 결정은 국가안보, 경쟁 환경, 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의 신용 · 성향, 정부 정책 등 국가이익 관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청서에는 실질적 지배구조(beneficial ownership), 법인 구조, 자금 출처, 사업계획, 기존 호주 내 보유 자산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하며,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누락된 경우 심사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구조를 최적화하고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수수료 | Fees

투자 규모에 따라 FIRB 신청 수수료가 달라지며, 소규모 투자에는 약 2,400호주달러, 50억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인수의 경우 최대 141,300호주달러까지 부과됩니다. 1백만 호주달러 미만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시 일반적으로 2,400호주달러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조건 및 지속적 준수 | Conditions and Ongoing Compliance

FIRB 승인은 일정한 조건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호주산 콘텐츠 제작 의무, 호주 내 본사 유지, 고용 유지 약정, 또는 조건 위반 시 지분 매각(divestment)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례 준수보고서(Annual Compliance Statement)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승인 조건을 위반할 경우 민사 및 형사상 중대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내용에는 최대 1,395만 호주달러 또는 부당이익의 3배 중 더 큰 금액의 벌금과 지분 강제 매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면제증서 | Exemption Certificates

면제증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반복적인 투자나 인수에 대해 개별 FIRB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특정 산업이나 부동산 유형에서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유효기간은 12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부여되며, 세부 요건과 범위는 증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기업 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기업 지배구조는 회사의 운영과 의사결정을 규율하는 규칙과 정책 전반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부 구성원으로는 이사와 주주가 있으며, 정부, 입법기관, 규제 당국 등 외부 기관 역시 기업의 의사결정과 운영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배구조 관련 주요 법령 및 규율 체계

호주 회사는 다음과 같은 법적 · 제도적 체계에 따라 규율됩니다:

- 2001 회사법(the Corporations Act 2001 (Cth)): 행정, 재무보고, 인수 · 합병, 주주 권리, 금융서비스 인가 및 자금 조달과 관련된 준거 규칙을 규정하는 주요 법률 체계
- 회사정관(Company Constitution): 회사 설립 후 적용되는 내부 운영 및 지배구조 규칙을 규정
- 보통법(Common Law): 법원 판례를 통해 보완적 지배구조 원칙과 해석 기준을 제공

호주증권거래소(ASX) 상장 규정

호주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은 상장 승인, 호가, 공시, 증권, 주주총회, 거래 정지에 관한 Australian Stock Exchange (ASX) 상장 규정(Listing Rules)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장 기업은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에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Corporate Governance Statement)를 포함해야 합니다.

ASX 상장규정 제4판(2019)은 다음과 같은 8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 경영 및 감독을 위한 견고한 기반 마련
- 가치 창출을 위한 이사회 구조
- 윤리적 행동과 책임 경영
- 기업 보고의 신뢰성 확보
- 시기적절하고 균형 잡힌 공시
- 주주 권리 존중
- 리스크 인식과 관리 체계 확립
-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상 제도

이사 식별번호(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모든 회사 이사는 이사 식별번호(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DIN")를 취득해야 합니다. DIN은 개인별로 부여되는 평생 고유 식별번호로, 호주 사업자 등록 서비스(Australian Business Registry Services, ABRS)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원 확인(일반적으로 100포인트 확인 방식)이 요구되며, DIN 발급은 무료입니다. 신규 이사는 이사로 임명되기 이전에, 기존 이사는 임명 후 28일 이내에 DIN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이사회 요건 및 의무

비공개회사는 최소 한 명의 이사를 보유해야 하며, 공개 회사는 최소 3명의 이사 보유, 이 중 최소 2명은 호주 거주자여야 합니다.

이사는 회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지위에 있었다면 행사했을 정도의 주의(care)와 성실(diligence)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최근 법적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주의의무는 회사의 가치나 명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재무적(non-financial) 위험을 인지하고 관리할 적극적 의무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ESG(환경 · 사회 · 지배구조요인): 이사는 회사의 기후 관련 위험(climate-related risks), 조직문화(cultural safety), 공급망 내 인권 준수(human rights compliance), 그리고 사회적 기준(social standards) 준수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적절히 모니터링하거나 대응하지 못할 경우, 이는 주의의무 위반(breach of the duty of care)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기업문화 및 심리적 안전(Company Culture and Psychological Safety): 이사는 긍정적이고 안전한 조직 문화를 조성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성희롱(sexual harassment), 직장 내 괴롭힘(bullying), 심리적 손상(psychological injury) 등과 관련된 리스크 완화(risk mitigation) 의무를 포함합니다.

2001 회사법(The Corporations Act 2001 (Cth)) 과 보통법(Common law)은 이사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성실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
- 합리적 주의의무와 감독의무의 이행
- 회사 이익을 우선한 선의의 판단 및 정당한 목적을 위한 권한 행사
- 사적 이익을 위해 지위나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의무
- 중대한 개인적 이해관계의 공개 및 이해충돌 회피
-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서의 거래하지 않도록 할 의무

주주 총회

공개회사는 등록 후 18개월 이내에 첫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비공개회사는 법적 총회 개최 의무는 없으나, 정관에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릅니다.

공시, 보고 및 감사

회사는 주주 변동, 주식 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발생 시, 28일 이내에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통지해야 합니다. 공개 회사, 대규모 비공개 회사, 일부 소규모 비공개회사는 감사 받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이사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공시대상법인) 혹은 4개월 (기타 해당 회사)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ASX 상장회사는 증권 가격 또는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호주회계 기준위원회(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기준을 충족하는 감사 받은 연간 및 반기 재무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재무기록은 최소 7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국제 무역

Cross-Border Trade

호주의 무역 체계는 자유무역협정(FTA), 간소화된 통관 절차, 그리고 명확한 수입·수출 규정을 통해 국제 상거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 Free Trade Agreements

호주는 대한민국(KAFTA), 중국(ChAFTA), 일본(JAEP), 미국(AUSFTA)을 비롯하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수의 국가 및 지역과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들 협정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통관 절차 간소화, 그리고 시장 접근성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KAFTA)은 2014년 12월 발효되어 호주의 대한민국 수출품의 99% 이상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였습니다. 협정상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요건을 충족해야만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수입 허가 및 면허 | Import Licensing and Permits

대부분의 상품은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으나, 검역물품, 의약품, 식품, 화학제품, 방위산업 관련 품목 등 일부 품목은 수입허가 또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농림수산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는 생물안전성(biosecurity) 관리를 담당하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우 의약품관리청(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TGA)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수입신고는 일반적으로 통합화물시스템(Integrated Cargo System, ICS)을 통해 통관 대리인(Customs Broker)이 처리하며, 수입업자는 호주 사업자등록번호(ABN)를 보유해야 하고, 상품의 종류에 따라 수입·수출 면허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세 및 품목분류 | Customs Duties and Tariff Classification

수입품에는 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System, HS)에 따른 관세분류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비농산물(non-agricultural goods)은 0~5% 수준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입 시에는 부가가치세(GST)가 부과되며, 상품의 세관가(customs value), 관세(duty), 그리고 운송비 및 보험료(transport and insurance costs)의 합계 금액입니다.

정확한 품목분류는 매우 중요하며, 호주 Australian Border Force(ABF)는 기업이 사전에 세율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품목분류 자문(Binding Tariff Advice)을 제공합니다. 상품의 평가(valuation)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주로 거래가격방식(transaction value method)을 사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수출 통제 | Export Controls

방위산업 및 전략물자(Defence and Strategic Goods)의 수출에는 「2012년 방위무역통제법(Defence Trade Controls Act 2012, Cth)」에 따라 수출허가(export licence)가 필요합니다.

방위 및 전략물자 목록(Defence and Strategic Goods List, DSSL)에 포함된 상품 및 기술은 반드시 수출허가증(permit)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제재 및 수출통제법(Sanctions and Export Control Laws)에 따라 특정 국가, 단체, 개인과의 거래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수출업자는 반드시 외교통상부(DFAT)가 관리하는 자율제재법(Autonomous Sanctions Act 2011, Cth) 및 유엔 제재(UN Sanctions)를 준수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하여 제재 대상과의 거래를 방지해야 합니다.

무역구제조치 | Trade Remedies

호주는 국내 산업을 불공정무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anti-dumping), 상계(countervailing),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덤핑방지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는 관련 제소 및 불만사항을 조사하며, 덤핑방지관세(dumping duties),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관세 인상(tariff increases) 등의 구제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뇌물 및 부패 방지 | Anti-Bribery and Corruption

호주 연방 형법(Commonwealth Criminal Code)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호주 기업 및 개인은 해외에서 발생한 외국인 뇌물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기소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교역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업 등 조직(organisations)은 제3자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명확한 내부 정책 수립, 임직원 교육(training),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포함하는 반부패 준법 프로그램(anti-bribery compliance program)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호주연방경찰(Australian Federal Police, AFP)과 연방검찰청(Commonwealth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CDPP)은 해외 뇌물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 및 기소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

Banking and Finance

호주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 기업에게는 은행과의 거래 관계를 구축하고 호주의 금융 규제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업은행 계좌 개설 | Opening Business Bank Accounts

외국 기업은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호주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은행은 회사 등록증, 이사 신원확인 서류, 실질적 소유구조(beneficial ownership) 공개 자료, 그리고 사업 활동을 입증하는 서류 등 광범위한 신원확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모든 이사는 회사 등록 이전에 이사 식별번호(DIN)를 취득하거나 신청해야 하며, 호주 내 거주 주소를 가진 이사가 최소 한 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이사 중 한 명 이상에 대한 대면 신원확인을 요구하지만, 일부 은행은 영상 인증 절차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계좌 개설에는 일반적으로 1~2주가 소요되며, 초기 예치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이후에도 거래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고객 정보 갱신 절차를 포함하여 지속적 준법 감시를 실시합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2006년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Act 2006, Cth)」은 금융기관과 지정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체는 AUSTRAC(호주거래보고·분석센터)에 등록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TF)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고객 실사를 수행하며, 의심 거래 및 기준금액 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기록은 최소 7년간 보관해야 하며, 고위험 고객이나 정치적 노출 인사(Politically Exposed Persons)에 대해서는 강화된 실사가 적용됩니다.

신용업 허가 | Credit Licensing

신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로부터 호주 신용업 라이선스(Australian Credit Licence, ACL)를 취득해야 합니다. 신용활동에는 신용 제공, 신용 지원, 그리고 신용 대리인으로서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2009년 국가소비자신용보호법(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2009 Cth)」은 책임 있는 대출 의무(responsible lending obligations)를 규정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보유자는 충분한 재무 자원을 유지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입증하며, 분쟁 해결 체계를 갖추고, 책임대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무허가 신용활동에 대해서는 중대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국경 간 결제 및 외환 | Cross-Border Payments and Foreign Exchange

호주는 외환규제가 없어 자본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외화 거래는 은행 및 인가된 외환 딜러를 통해 이루어지며, 관계회사 간의 국경 간 거래는 이전가격규정(transfer pricing rules)에 따라 이익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됩니다. 국제 송금업체는 AUSTRAC에 등록하고 AML/CTF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SWIFT 및 기타 국제 결제 시스템이 자유롭게 운영됩니다. 세무 목적상 송금 관련 문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APRA 규제 | APRA Regulation

호주건전성감독청(APRA)은 은행, 보험사, 그리고 연금기금을 감독합니다. 외국 금융기관이 호주 내에 영업망을 설립하려면 APRA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자본적정성, 유동성, 그리고 지배구조 기준에 따라 지속적인 감독을 받습니다. 또한, 외국은행이 예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가된 예금취급기관(Approved Deposit-Taking Institution, ADI) 지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Disclaimer: This guide provides general information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as legal advice. Professional legal counsel should be sought for specific circumstances and transactions.



고용 및 노동법

Labour Law

2009 공정근로법(The Fair Work Act 2009(Cth))은 민간 부문 근로관계를 주로 규율하며, 국가 차원의 근로 관계 기준을 설정합니다.

공정근로옴부즈만(The Fair Work Ombudsman)과 공정근로 위원회(Fair Work Commission)는 관련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감독합니다. 모든 고용 계약은 관련 법률 및 산업별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호주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법인의 설립지와 관계 없이 공정근로법(The Fair Work Act 2009)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 형태

• Full-time 및 Part-time

정규직(Full-time과 Part-time 모두 해당) 근로자는 유급휴가 및 공휴일을 포함한 고용보장을 갖습니다. Full-time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주당 35~38 시간 근무하며, Part-time 근로자는 Full-time근로자보다 더 적은 시간으로 정기적인 일정 하에서 근무합니다.

• Casual 근로자

Casual 근로자는 정기적인 근로 시간이나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으며, 근무 일정이 유연합니다. 유급휴가권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높은 시간당 임금(casual loading)을 지급받습니다.

법적 최소 요건

• 국가고용기준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NES)

주간 최대근로시간, 유연근무 요청권, 각종 휴가 권리(출산 및 육아휴직, 연차휴가, 개인/간병휴가, 장기근속휴가), 해고 및 정리해고 시 권리 등이 최소 고용 기준에 포함됩니다. Casual 근로자에게는 이러한 기준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2025년 7월부터 최저 시급은 24.95달러이며, 산업별 근로조건에 따라 별도의 요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산업별 근로조건 (Modern Awards)

산업, 직종별로 임금, 휴가, 휴게 시간, 수당, 초과 근무 수당 등 비관리직 및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최소 근로 요건을 규정합니다.

• 연금 (Superannuation)

2025년 7월 기준으로, 고용주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2%를 분기별로 연금기금에 납부해야 하며, 이는 임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 산업 안전 보건 (Work Health and Safety)

호주의 각 주(state) 및 준주(territory) 법령은 고용주가 작업장 내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안전한 사업장 및 장비 제공, 적절한 근무 환경 조성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포함), 협의 절차 준수, 관련기록 유지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 및 고위 경영진은 개인적으로 '실사(due diligence)' 의무를 부담합니다.

• 일반 보호 (General Protections)

고용주는 차별적인 사유(인종, 성별, 연령, 장애)나, 작업장 권리 행사, 질병·부상으로 인한 일시적 결근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 위장 근로 계약 (Sham Contracting)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적 혜택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관계를 독립 계약관계로 잘못 분류하거나 가장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요구사항

• 산재보상 (Workers Compensation)

모든 주(state)와 준주(territory)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임금 손실 및 의료비를 보장하는 산재보험을 유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부당해고 (Unfair Dismissal)

자격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가혹하거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방식"의 해고 및 실질적 사유가 없는 정리해고에 대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직 복직 명령(reinstatement) 또는 금전보상명령(compensation)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호주 시민 및 영주권자는 근로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 외의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적절한 취업 비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 단기 체류 비자

비즈니스 문, 업무상 협의, 워킹 홀리데이 등 특정한 사업목적의 활동만 가능하며, 통상적인 고용 또는 근로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임시 취업 비자

숙련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고용주의 스폰서십 또는 독립 기술 심사를 통해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수년간) 호주에서 임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기술직 임시단기비자' (TSS, 482) 비자는 고용주가 특정 숙련 직종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영주 취업 비자

영구 거주권을 부여하는 비자로, 특정 직업 능력 또는 사업, 기업이 역량을 요구하며 주로 고용주 지명 또는 스폰서십을 요구합니다.

호주의 이민 제도는 외국인 사업가가 호주에 입국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자 유형을 제공합니다.

비자 요건은 비자가 영주 또는 임시 입국을 허용하는지 여부, 그리고 신청인이 이민법상 고수권 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자 신청자는 건강 및 신원 심사(health and character examinations)를 이행해야 합니다.

단기 체류 비자

• 단기 비즈니스 방문자:

적격한 여권을 소지한 신청인은 실질적 비즈니스 방문 목적이 있는 경우, 전자여행허가(ETA - Subclass 601) or eVisitor 비자(Subclass 651)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자 소지자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문의, 비즈니스 계약 체결 등 '비즈니스 방문 활동'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ETA 또는 eVisitor 비자 대상 국가의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비즈니스 방문 스트림(Business Visitor Stream)의 Subclass 600 비자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해당 비자 소지자는 입국 시 최대 3개월 동안 호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단기 취업 비자 (Subclass 400):

호주를 방문하여 단기간 동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비정규직 업무를 수행하려는 비즈니스 방문자는 Subclass 400 비자를 취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자 소지자는 통상적으로 최대 3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충분한 사업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중장기 체류 비자

• 기술직 임시단기비자 (Subclass 482):

호주 내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해외 기업은, 직원의 직무가 숙련 직군 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Subclass 482 기술직 임시단기비자(TSS 비자)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비자 승인 시 일반적으로 최대 4년간 호주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홍콩 여권 소지자는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부터 '수요 기술 비자(Skills in Demand visa)'가 기술직 임시단기비자(TSS)를 대체하고, 세 가지 경로 및 간소화된 심사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자 비자:

과거에는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자 비자(Business Innovators and Investment (Provisional) visa, Subclass 188)를 통해 개인이 호주에서 사업 또는 투자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Subclass 888 비자와의 연계를 통해 영주권 취득 경로도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31일부로 신규 신청 접수가 중단되었습니다.

Subclass 188 비자를 대체하기 위해 2024년 12월 '국가혁신비자(National Innovation Visa)'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우수한 기업가 및 주요 투자자 등 '탁월한 역량을 갖춘 인재(the most exceptional talent)'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고성능 창업자(high-performing entrepreneurs) 혹은 대규모 투자자(major investors)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비자는 기존 Subclass 188 비자의 목적을 계승하되, 보다 특정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주 이민 비자

• 고용주 지명 비자 (Employer Nomination Scheme Visa, Subclass 186):

Subclass 186 비자는 해외에서 고도로 숙련되고, 실제로 필요한 인력을 고용주가 후원하여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신청 경로가 있습니다.

(1) Direct Entry Stream

- 호주 내 근무 경력이 없거나 경력이 제한적인 경우 적합합니다.

(2)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 일반적으로 Subclass 482 기술직 임시단기비자를 이미 보유한 신청인에게 적합합니다.

(3) Labour Agreement Stream

- 고용주가 체결한 노동 계약(Labour Agreement)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후원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 기술 독립 비자/ 주 또는 준주 지명 비자

(Skilled Independent/State or Territory Nominated Visa):

기술 독립 비자(Skilled Independent Visa, Subclass 189)는 포인트제 기반의 영주 비자로, 고용주의 후원을 받지 않는 숙련 기술 근로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비자는 주(state) 또는 준주(territory)의 지명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기술 지명 비자(Skilled Nominated Visa, Subclass 190) 역시 포인트제 기반의 영주 비자이며, 주 또는 준주 정부의 지명을 받은 신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자는 지명 조건 외에도 해당 기술 요건, 영어 능력, 경력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

Taxation in Australia

호주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각각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요 연방 세금(federal taxes)에는 소득세(양도 소득세(Capital gains tax) 포함), 부가가치세(GST),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s tax), 그리고 퇴직연금 보장금(Superannuation guarantee)이 포함됩니다. 주 차원의 주요 세금(state taxes)에는 취득세(Transfer Duty)와 급여세(Payroll Tax)가 포함됩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연방 세금을 관할하며, 각 주(state)와 준주(territory)는 자체 세무 당국을 통해 지방세를 관리합니다

소득세 | Income Tax

연방 정부는 개인과 법인에 관계없이 호주 거주자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개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세법상 호주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호주에 거주하는 경우
- 호주에 법적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단, 해외에 영구적인 거주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회계연도 중 183일 이상 호주에 체류한 경우
(단, 호주에 거주할 의사가 없고 통상적인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
- 특정 퇴직 연금 관련 법률에 따라 '적격 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우

회사가 호주에서 법인으로 설립되었거나, 호주 거주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업을 호주 내에서 영위하는 경우, 조세 목적상 호주 거주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비거주자의 호주 원천 소득도 과세 대상입니다. 계약 체결이나 사업 활동이 호주에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소득은 호주 원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한편, 호주 거주자의 해외 원천 소득은 해당 소득이 호주로 송금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호주는 일부 국가들과 체결한 양자 조세 협정(DTA)을 통해, 호주 거주자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면세하거나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호주 거주자는 국세청(ATO)에 등록하여 세금 납세자 번호(TFN)를 발급받고, 연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30% 법인세율이 적용되지만, 연간 매출액이 5,000만 호주달러 미만인 기업에는 2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 Capital Gains Tax, CGT

양도소득세는 소득세 체계의 일부로, 순자본이득이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자본이득이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을 의미합니다. 비거주자는 호주 내 과세 대상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만 양도 소득세가 적용되며, 이에 해당하는 자산에는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간접 지분, 광업권 등이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 | Goods and Services Tax, GST

10%의 부가가치세(GST)는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수입 과정에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GST) 면제 대상에는 금융상품, 수출품, 기본 식료품, 주거용 숙박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연간 매출이 75,0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자는 GST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고 호주 사업자 번호(ABN)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가급여세 | Fringe Benefits Tax, FBT

고용주는 직원, 그 가족 및 관련자에게 제공되는 비현금성 급여의 총액조정가치(grossed-up value)에 대해 47%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비현금성 급여를 받는 사람은 이 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연금보장금 | Superannuation Guarantee

고용주는 각 직원의 통상 급여의 최소 12%를 분기별로 직원의 연금 기금(superannuation fund)에 납입해야 합니다. 2024-25년 회계연도 기준, 고용주의 납부액 상한(cap)은 분기당 최대 7,500 호주달러입니다. 고용주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연금 보장 부담금(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s)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 Transfer Duty

취득세율은 관할권마다 상이합니다. 주(state) 및 준주(territory) 정부는 토지, 광물 및 석유 채굴권, 임차권, 건물 및 기타 구조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지분 이전 시 취득세(transfer duty)를 부과합니다.

급여세 | Payroll Tax

총 연간 임금이 해당 연도 급여세 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고용주는 급여세를 납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세의 과세 기준 및 세율은 주(state)와 준주(territory)별로 상이합니다.

세액 공제 및 세제 혜택 | Tax Concessions

호주는 연구개발(R&D) 조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2,000만 달러 미만인 적격 기업은 법인세율에 추가 18.5%를 더한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에 8.5% 또는 16.5%를 가산한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 혁신 기업(Early Stage Innovation Companies, ESICs)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조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투자자는 투자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연간 최대 20만 달러 한도)와, 주식을 12개월 이상 10년 이하 보유한 경우에 적용 가능한 양도소득세(CGT) 면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원천징수세 | Withholding Tax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이자 지급액에 대해 10%(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감면 가능), 일반 배당 소득(unfranked dividends)에 대해 30%(조약에 따라 감면 가능), 로열티에 대해 30%(조약에 따라 5% 또는 10%로 감면 가능)가 적용됩니다.

법인세가 이미 납부된 배당금(fully franked dividends)은 원천징수세가 면제됩니다.

호주 사업자 번호 | ABN

호주 사업자 번호(ABN)는 부가가치세(GST) 등록 사업자에게 필수로 부여되는 고유 식별 번호이며, 호주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에게도 등록이 권장됩니다. 비거주자 사업자가 ABN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호주 내 고객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47%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배당유보세액공제 제도 | Dividend Imputation System

호주는 기업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배당세액 공제 제도(an imputation syste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주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에는 회사가 이미 납부한 세금에 상응하는 프랭킹 크레딧(frinking credit)이 부여됩니다. 적격 납세자는 보유한 프랭킹 크레딧(frinking credits)이 납부 세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Real Estate and Property Law

호주 부동산법은 토렌스 등기제도(Torrens Title System)를 기반으로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사용, 이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이를 통해 소유권의 명확성과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규율 영역에는 주거용 및 상업용 임대차, 부동산 매매, 토지 개발, 용도구역(Zoning) 규제, 소유권 분쟁 등을 포함합니다. 부동산법은 주(state)와 준주(territory)별 법률에 의해 주로 규제되며, 외국인 투자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법인 1975 외국인 투자법(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Cth))도 적용됩니다.

토지 소유권 | Land Ownership

호주의 토지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완전 소유권(freehold title) 형태로 부여되며, 소유자에게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다만, 광물권 및 일부 자원권은 정부에 귀속됩니다.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정부가 토지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장기 임대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사용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 실사 | Due Diligence for Purchasers

호주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현 상태"로 거래되므로, 구매자는 거래 이후 발견된 결함이나 문제에 대해 제한적인 구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철저한 실사(Due diligence)가 필수적이며, 이에는 등기 및 소유권 확인, 임대차 · 저당 · 지역권 등 부담 사항(encumbrances)의 검토, 용도지역 규제 확인, 부동산의 물리적 · 구조적 상태 점검 등이 포함됩니다. 판매자는 계획증명서(planning certificates), 건축 보증서(building warranties) 오염 보고서(contamination reports) 등 관련 서류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 Foreign Investment

호주 정부는 주거용, 상업용, 농업용 부동산 및 광산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규율하는 특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해당 투자가 FIRB 심사 면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에 신고해야 합니다. 면제 증명서(Exemption certificates)는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투자를 승인 재신청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오프더플랜 부동산 | Off-the-Plan Properties

오프더플랜 형식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아직 구분 등기(subdivision)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구매자 보호 장치로는 영업일 기준 10일의 청약 철회 기간(cooling-off periods), 잔금 정산(settlement)까지 예치금의 신탁 보관, 예정된 완공일로부터의 현저한 지연이나 평면도를 포함한 주요 문서의 실질적 변경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스트라타 타이틀 | 구분 소유 방식, Strata Title Properties

스트라타 타이틀(구분 소유) 제도는 각 세대에 대한 개별 소유권을 가지되, 공용 구역은 관리단(owners' corporations)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이 단체는 건물의 유지보수, 관리 규정의 시행, 공용시설 유지비용을 위한 부과금 징수를 담당합니다. 스트라타(구분 소유) 관련 법규는 주(state)마다 다르지만,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및 전자등기 | Contracts and eConveyancing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매도인의 변호사(solicitor) 또는 컨베이어ncer(conveyancer)가 작성하며, 매매 가격, 소유권 이전(settlement) 예정일, 특약 등 매매 조건을 포함합니다. 최근에는 PEXA(Property Exchange Australia; 호주 부동산 거래 플랫폼)와 같은 전자 등기 플랫폼을 통해 거래 과정이 크게 간소화되었지만, 태즈메이니아(Tasmania)와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에서는 아직 플랫폼 접근이 제한적입니다.

임대차 및 사용허가 | Leases vs. Licenses

임대차(Leases)는 세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하고 점유했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며,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반면, 사용허가(Licenses)는 독점적 점유권이나 소유권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합의된 조건에 따라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다 유연하게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계획 및 환경 인허가 | Planning and Environmental Approvals

지역 계획 당국(Local Planning Authorities)은 용도지역(Zoning) 규제, 환경 보호 조치 및 개발 제한을 통해 토지 이용과 개발을 관리합니다. 이에 따라 개발에는 계획 허가(Planning Permit) 및 건축 승인(Building Approval)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경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법(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 (Cth))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환경 관련 사안(national environmental concerns)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환경 관리 | Environmental Management

환경 관련 법규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활동, 특히 산업 운영에 대해 환경 허가(licences) 취득을 요구합니다. 부동산 점유자 및 사업체는 오염 위험을 관리하고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상당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주민 참여 및 문화유산 보호 | Indigenous Engagement and Cultural Heritage

호주에서 원주민 지역(Indigenous lands) 또는 문화유산지(cultural sites) 인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연방 및 주·준주 차원의 원주민 문화유산 보호법(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heritage protection legislation)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려는 경우, 전통 소유자(traditional owners)와의 협의(consultation) 및 문화유산 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원주민 토지 이용 협약(Indigenous Land Use Agreements, ILUAs)은 원주민 소유권(native title)이 인정된 토지에서의 토지 개발, 광산 개발, 또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전통 소유자 집단과의 성실한 협상(good faith negotiations)이 요구되며, 각 주 및 준주 법률은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timelines)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쟁 및 소비자법

Competition and Consumer Law

호주의 경쟁 및 소비자법(The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CCA)은 경쟁 제한 행위(anti-competitive behaviours)를 금지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시장을 유지하고 소비자 후생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호주 시장을 규율합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이 법을 집행하며, 광범위한 조사 및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경쟁 제한 행위 금지 규정

• 카르텔 행위 (Cartel Conduct)

금지되는 합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가격 담합: 가격을 고정, 통제, 또는 유지하는 합의
- 입찰 담합: 공모 입찰, 경쟁 제한, 순환 입찰 등으로 입찰 절차를 조작하는 행위
- 생산 제한: 생산 또는 공급 능력을 제한하는 행위
- 시장 분할: 고객 또는 공급 구역을 분할하는 행위

위 합의는 명시적이거나 서면일 필요는 없습니다. 소비자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한적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 요건은 복잡하고 해석상 쟁점이 많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 배타적 거래 (Exclusive Dealing)

상품서비스의 공급 또는 취득과 관련해 다른 거래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경우 · 불법이며, 제3자로부터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Third line forcing)도 포함됩니다. 기업은 ACCC에 이에 대한 면제를 신청하여 특정행위에 대한 예외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 재판매 가격 유지 (Resale Price Maintenance)

최소 재판매가격을 설정하는 행위는 경쟁 효과와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공동 행위 (Concerted Practices)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당사자 간의 모든 협력 행위(정보 교환 포함)는 금지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게 상당한 조사 및 집행 권한을 부여하여 경쟁질서 유지와 공정거래 환경 확보를 보장합니다.

• 인수합병 (Mergers and Acquisitions)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지분 또는 자산 취득은 금지됩니다.



위반 시 제재 | Consequences

경쟁 및 소비자법(CCA) 위반 시 회사는 최대 5,000만 호주 달러, 합리적으로 귀속 가능한 이익의 3배, 또는 위반 기간 동안 법인의 조정 매출액(adjusted turnover)의 30% 중 더 큰 금액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250만 호주 달러의 벌금과 이사 자격 정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카르텔 행위(Cartel conduct)는 형사책임이 적용되어 개인에게 벌금 및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회사는, 해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호주 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CCA의 금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소비자 보호 | Consumer Protection

호주 경쟁 및 소비자법(CCA)에 포함된 호주 소비자법(The Australian Consumer Law (ACL))은 시장 내 거래 관행을 규율하는 행동 기준을 설정합니다.

• 현혹적 혹은 기만적 거래행위 (Misleading or Deceptive Conduct)

ACL은 소비자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현혹 또는 기만적 거래 행위를 금지하며, 사실과 다른 인상을 주거나 상대방을 오도하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 소비자 보증 (Consumer Guarantees)

ACL은 다음과 같은 법정 기준을 부과합니다:

- 적법한 판매 권리 보유
- 목적 적합성(공개되었거나 의도된 목적)
- 허용 가능한 품질
- 설명, 표시와의 일치
-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due care and skill)을 갖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목적 적합성 충족

해당 기준 위반 시 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ACCC) 또는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의 제재 조치나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법원은 거래 무효화, 손해배상 등 다양한 제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 제한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최대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 계약조항제도 | Unfair Contract Terms, UCT

호주 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 ACL)은 소비자 또는 중소기업과 체결된 표준 계약(Standard Form Contract) 내에서 불공정 계약조항(Unfair Contract Term)을 제안하거나 사용하거나 그에 의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1월 9일부터 시행된 주요 법 개정 이후, 호주 시장 내 모든 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 규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 적용 범위 (Scope and Application)

불공정 계약조항 제도는 상품, 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표준 계약에 적용됩니다. 계약 체결 당시 한쪽 당사자가 다음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소규모 사업자(small business)"로 간주됩니다:

- 직원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이전의 20명 기준에서 확대됨), 또는
- 연간 매출액이 1,000만 호주달러 미만인 경우

"표준 계약(Standard Form Contract)" 여부는 당사자 간 협상력의 구조적 불균형(bargaining dynamic)을 보다 폭넓게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당사자들이 일부 조항에 대한 경미한 수정(minor or insubstantial changes)을 했거나 사전에 정해진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협상 기회가 없었다면 해당 계약은 여전히 표준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계약을 작성하지 않은(non-drafting) 당사자에게 계약 조건을 실질적으로 협상할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 불공정성 판단 기준 (The Test for "Unfair")

표준 계약의 조항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불공정(unfair)"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불균형(significant imbalance)을 초래할 것,
- 해당 조항이 그 조항으로 이익을 얻는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닐 것,
- 해당 조항이 적용되거나 집행될 경우, 상대방에게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손해(detriment)를 초래할 것.

공정 계약조항 심사에서 자주 문제 되는 조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한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또는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거나 상대방에게 과도한 배상 의무(indemnity)를 부과하는 조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위반 시 제재 (Consequences of Non-Compliance)

2023년 개정법은 불공정 계약조항 제도의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근본적으로 개정하였으며, 중대한 금전적 제재(substantial penalties)가 도입되었습니다.

- 무효 조항(Void Term): 법원이 특정 계약조항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void)로 간주되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unenforceable). 다만, 무효 조항이 제외된 후에도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면, 나머지 계약 조항은 여전히 유효(valid)하게 유지됩니다.
- 금전적 제재(Pecuniary Penalties): 개정법은 불공정 조항을 제안하거나, 사용하거나 의존(rely upon)한 경우에 대해 중대한 민사상 벌금(civil penalties)을 부과합니다. 법인의 경우, 위반 행위 1건당(즉, 불공정 조항 하나를 제안 · 사용 · 의존한 경우) 부과되는 최대 벌금은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5천만 호주달러 (A\$50 million)
 - 위반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의 3배 (산정 가능한 경우)
 - 위반 기간 동안의 조정 매출액(adjusted turnover)의 30%
- 법원 명령(Court Orders): 법원은 또한 구제명령(remedial orders)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계약 전체를 무효로 선언하거나, 향후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항의 사용을 금지하는 금지명령(injunction)을 내릴 수 있습니다.

투자 펀드

Investment Funds

호주는 세계 경제 규모 기준 16위로, 안정적인 성장, 성숙한 자본시장, 예측 가능한 규제 체계, 숙련된 인력,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외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시장 접근성 확대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해외 경제권의 호주에 대한 누적 투자 규모는 5조 호주달러에 달하며, 이는 해외직접투자 유입 규모 기준으로 전 세계 15위에 해당합니다.

법적 구조 | Legal Structures

• 유닛 트러스트 (Unit Trusts, 단위신탁)

유닛 트러스트는 유연성과 통과과세(flow-through tax treatment) 적용으로 인해 투자 펀드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펀드 자산은 수탁자(trustee)가 유닛(지분, unit)을 보유한 투자자를 위해 신탁 형태로 보유합니다. 수탁자는 수익자에 대한 신의성실의무(fiduciary obligations)를 부담하며, 통상 투자운용사(investment manager)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다수의 유닛 트러스트는 "Corporations Act 2001 (Cth)" 상 관리형 투자 스킴 (Managed Investment Scheme, MIS)에 해당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준법, 거버넌스, 공시 요건이 적용되며, 적절한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Licence, AFSL)을 보유한 '책임기관(responsible entity)'의 선임이 요구됩니다.

• 유한책임조합 (Limited Partnerships)

유한책임조합은 주로 사모투자(PE)와 벤처캐피탈(VC)에 활용되며, 관련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Venture Capital Act 2022 (Cth)"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캐피탈 유한책임조합(VCLP) 및 초기단계 벤처캐피탈 유한책임조합(ESVCLP)은 통과과세 적용(flow-through tax treatment) 및 소득세 면제 등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장투자회사 (Listed Investment Companies, LICs)

상장투자회사는 주식, 채권, 고정수익 등으로 구성된 분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공개회사(public company)이며, 그 주식은 호주증권거래소(ASX)에서 거래됩니다.

LIC는 일반적으로 신포쇄형(close-ended) 구조로 운영되며, 신규 주식의 발행 또는 소각이 제한적입니다.

• 법인형 집합투자기구 (Corporat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CCIVs)

법인형 집합투자기구(CCIV)는 2022년에 도입된 신탁형 구조의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식회사(유한책임) 형태로 설립되며, 하나 이상의 하위 펀드(sub-fund)에 자산과 부채를 배분합니다. CCIV 자체는 임직원 또는 자연인 이사를 둘 수 없으며, 대신 AFSL 인가를 보유한 공개회사(public company) 형태의 법인이사(corporate director)가 CCIV의 운영을 담당합니다.

• 사모크레딧 (Private Credit)

사모크레딧(Private Credit)은 신용운용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비공개(non-public) 신용공여로서, 대출, 채권, 어음 또는 유동화(securitisation) 구조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공개 금융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은행 대출의 제공이 어려운 복잡한 금융 구조,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또는 공모 채권시장에 접근이 제한된 중·소규모 기업(SME)에게 특히 유용한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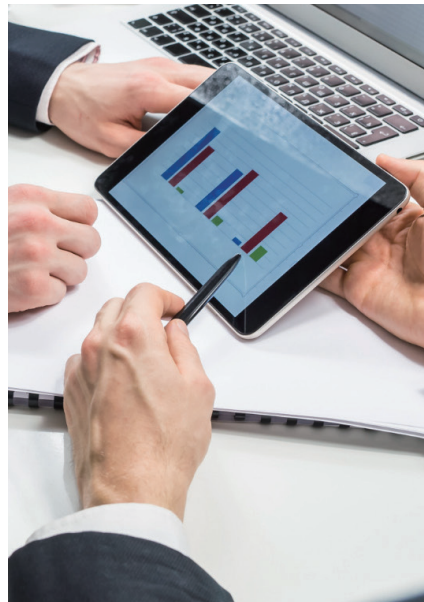
• 준법 의무 (Compliance Requirements)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관은 일반적으로 ASIC으로부터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Licence, AFSL)를 취득해야 하며, 이는 적절한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보고의무 준수 등 다양한 규제상 의무를 포함합니다. ASIC은 2026년 3월 31일까지 호주 도매 고객 (Australian wholesale clients)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금융서비스 제공자 (Foreign Financial Service Providers, FFSPs)에게 한시적으로 전환기적 면허 예외 (Transitional licensing exemption)가 인정됩니다.

추가 준수 의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지정서비스(designated services)를 제공하는 기관은 AUSTRAC에 등록(enrol)하고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고객신원확인(Know Your Customer, KYC): 지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여, 자금세탁(ML) 또는 테러자금조달(TF) 악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펀드매니저는 소매(retail) 또는 도매(wholesale)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도매 투자 상품은 위험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매 투자 상품은 더 넓은 투자자층을 대상으로 하되 더 낮은 최소 투자금과 더 엄격한 규제 및 준수 의무가 적용됩니다.



분쟁 해결

Dispute Resolution

호주의 법률 체계는 연방(federal), 주(state) 및 준주(territory) 법원과 각종 심판기구(tribunals)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방 법원은 파산, 산업관계, 조세, 공정거래 등 연방법에 따른 사안을 관할하고, 주 및 준주 법원은 계약 분쟁, 과실(negligence) 청구 등 주·준주 법령에 따른 사안을 관할합니다.

소송 제기 | Initiating Legal Proceedings

법적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원의 관할 여부를 판단하고 소멸시효(limitation periods)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선정은 분쟁의 유형, 청구 금액, 해당 사안의 관할권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계약 또는 불법행위(불법행위법/민사책임) 청구는 청구 원인이 발생한 시점부터 6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송 절차의 주요 특징 | Key Features of the Litigation Process

호주 법원은 사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소송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절차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행정적 준비기일(administrative hearings)을 지정합니다. 민사 사건은 일반적으로 판사 단독으로 결정되며, 배심원 재판은 명예훼손(defamation) 등 일부 예외적인 유형에 한정됩니다.

소송 절차는 통상적으로 각 당사자가 청구와 방어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하는 소장 및 답변서 제출로 시작하며, 이어서 법률상 비공개 특권이 인정되는 문서를 제외한 관련 자료를 교환·제출하는 문서공개(discovery) 단계를 거칩니다. 이후 증거는 서면 진술서, 선서진술서(affidavits), 증인 진술서,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제출되며, 증인은 법정에서 반대신문(cross-examina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구제수단 | Available Remedies

법원은 사건의 내용과 청구된 구제수단에 따라 금전배상(monetary damages), 특정이행명령(specific performance orders), 금지명령(injunctions), 또는 확인적 구제(declaratory relief)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 Legal Costs

일반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승소한 당사자의 소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법원의 통상적인 소송 비용 명령은 실제 소송 비용의 약 60-70%를 보전하는 수준이며, 불필요한 지연이나 부당한 소송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전액 배상비용(indemnity costs)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비용의 80-95%까지 인정됩니다.

항소 절차 | Appeals Process

항소는 연방법원(Federal Court), 대법원(Supreme Court), 지방법원(District Court), 기초법원(Local Court)의 판결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호주 최고 법원인 호주 대법원(High Court of Australia)에 대한 항소도 가능하나, 이는 엄격히 제한된 사안에 한하며,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체적 분쟁 해결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 분쟁 해결방식에는 중재(arbitration), 조정(mediation), 전문가 결정(expert determination)이 포함되며, 국경을 초월한 분쟁에서는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와 국제상사법원(commercial Courts)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재는 중재판정부(tribunal)가 내리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의미하며, 이는 당사 계약에 명시되거나, 초기 조정을 요구하는 다단계 절차(multi-tiered approaches)의 일부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중재는 당사자 자치(party autonomy), 독립적 중재인 구성, 그리고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에 따른 국제적 판정의 집행력을 보장합니다.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ngapor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법원(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Courts)과 같은 국제상사법원들은 소송 절차와 중재 요소를 결합하며, 특화된 전문성과 유연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조정(mediation)은 독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 간 협의를 촉진하여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하도록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호주 법원은 비용과 지연을 줄이기 위해 재판에 앞서 조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명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 결정(expert determination)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내리는 결정으로, 구속력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기술적이거나 업종 특화된 분쟁에서 특히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호주는 *Foreign Judgments Act 1991(Cth)* 및 보통법(common law) 원칙에 따라 외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위 법률에 따라, 원고는 연방법원(Federal Court) 또는 주 대법원(State Supreme Courts)에 해당 외국 법원의 판결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6년 이내에 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외국 판결은 호주 법원이 직접 내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위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예: 미국)의 판결에 대해서는 보통법 원칙에 따라 승인 및 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사이버보안

Data Privacy and Cybersecurity

호주는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공개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보안 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법률은 「1988년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1988, Cth)」으로, 동 법률은 호주 개인 정보보호원칙(Australian Privacy Principles, APPs)을 규정하여 기업이 개인 정보를 처리할 때 준수해야 할 명확한 기준과 의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법의 엄격한 규정 하에 운영되는 데이터 침해 통지제도(Notifiable Data Breaches, NDB Scheme)는, 개인에게 중대한 피해의 가능성(serious likelihood of harm)이 있는 데이터 침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기관인 호주정보위원회(OAIC,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와 영향을 받은 개인에게 반드시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기업들은 사이버 회복력(cyber resilience), 데이터 보안(data security) 및 사고 대응 계획(incident response planning)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프라이버시 규제 환경은 기술의 발전, 사회적 변화, 법적 진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호주 정부는 프라이버시법의 현대화(modernisation)를 위한 전면적인 개정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근 제안된 주요 개정 방향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핵심 제안에는 더 동의 요건 강화, 개인정보 침해시 상향된 벌금, 개인정보 정의의 확대, 그리고 개인에 의한 직접적 권리 행사(direct right of action) 도입 등이 포함됩니다.

국경 간 데이터 이전 | Cross-Border Data Transfers

개인 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해외 수신자(Overseas Recipients)가 호주 개인정보보호원칙(APPs) 또는 이에 상응하는 동등한 보호체계(binding schemes)를 준수하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호주 내 기업은 해외 수신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accountability)을 계속 부담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업 내부 구속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BCRs),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SCCs), 개인 동의(Individual Consent) 등이 주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유사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갖춘 국가로의 이전은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Cloud Storage)를 활용할 경우에는 데이터 저장 위치 및 접근권한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프라이버시법 개정 | Privacy Act Reforms

현재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에 대한 개정안이 검토 중이며,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보다 동의 요건 강화, 삭제권을 포함한 확대된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의무적인 개인정보 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강화된 벌칙, 그리고 기술적 정보 및 추론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한 개인정보 정의의 확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강화된 준수 의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사이버보안 요건 | Cybersecurity Requirements

「2018년 핵심 인프라 보안법(Security of Critical Infrastructure Act 2018, Cth)은 통신, 에너지, 수도, 운송, 데이터 처리 등 주요 산업 부문에서 핵심 인프라 자산(Critical Infrastructure Assets)을 보유하고거나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사이버보안 의무를 부과합니다.

해당 기관은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 시 호주사이버보안센터 (ACSC, Australian Cyber Security Centre)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은 위험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사고 대응 절차(Incident Response Procedures), 취약점 평가(Vulnerability Assessments) 등을 포함한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가 핵심 인프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부는 안보 보호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지원 또는 개입 조치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호주는 국내 법률과 국제 협약에 기반하여 등록권(registered rights) 및 자동보호 제도(automatic protection)를 결합한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혁신, 창의성, 브랜드 가치를 보호함으로써 기업이 제품 개발 및 시장 확장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호주 정부 산하기관인 IP Australia가 상표(Trade Marks), 특허(Patents), 디자인(Designs), 그리고 식물 육종권(Plant Breeders' Rights)의 등록 절차를 담당합니다.

상표 | Trademarks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 브랜드명, 로고, 고유한 표지를 보호합니다. 등록된 상표는 10년간 호주 전역에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며, 무기한 갱신(renewable indefinitely)이 가능합니다.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상표 등록에는 통상 7~9개월이 소요됩니다. 보호 범위는 45개 상품 및 서비스 분류(Class)에 걸쳐 적용됩니다. 해외 출원인은 파리협약(Paris Convention)에 따라 자국 출원 후 6개월 이내에 우선권(priority)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는 반드시 상표 검색(Comprehensive Search)을 실시하여 충돌 가능성을 점검해야 하며, 등록 후에는 권리 침해 모니터링 및 적절한 사용 유지를 통해 권리 소멸 방지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호주는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 회원국으로, 이를 통해 국제 상표 등록(International Registration)이 가능합니다.

특허 | Patents

특허는 새롭고 유용하며 진보성 있는 발명(Novel, Useful, Inventive Solutions)을 보호합니다. 표준 특허(Standard Patent)는 20년간(의약품은 25년) 유효하며, 혁신 특허(Innovation Patent) 제도는 2021년 8월 폐지되었으나 기존 등록권에 대해서는 경과조치(Transitional Arrangements)가 적용됩니다.

특허 심사에는 통상 2~3년이 소요되며,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을 통해 국제적인 보호(International Protection) 및 12개월 이내의 우선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특허 출원은 공개 의무(Disclosure Requirements)와 선행기술조사(Prior Art Search)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권리자는 등록 후 침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 권리 행사를 통해 권리 보호를 유지해야 합니다.

저작권 | Copyright

저작권은 등록 절차 없이 자동으로 문학, 연극, 음악, 미술 등의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보호 기간은 일반적으로 창작자의 생존 기간에 70년을 더한 기간이며, 저작권에는 경제적 권리와는 별도로 저작인격권(Moral rights)을 가지며, 이는 저작자 표시권(attribution), 동일성 유지권(integrity), 그리고 허위표시 금지권(false attribution)이 포함됩니다.

외국 저작물은 베른협약(Berne Convention)에 따라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디지털 저작권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가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고용 관계에서 직원이 근무 중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고용주에게 귀속됩니다.

영업비밀 및 기밀정보 |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Trade Secrets

호주법은 영업비밀과 기밀정보를 보통법(common law), 계약상 의무(contractual obligations), 및 형평법상 신의의무(equitable duties)를 통해 보호합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본질적으로 비공개적이어야 하며, 신뢰관계 하에 제공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무단 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 NDA), 고용계약 내 비밀조항(Confidentiality Clause), 그리고 물리적 · 전자적 보안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별도의 등록 절차는 없으므로, 계약적 보호 장치가 핵심적입니다.

집행 | Enforcement

호주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은 민사상 구제수단과 형사상 제재를 모두 포함합니다. 민사 구제수단에는 금지명령(injunction), 손해배상(damages), 이익 반환(account of profits) 등이 있으며, 중대한 침해행위(예: 위조나 불법복제)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호주 국경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는 침해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 보호 조치(border protection measures)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IP Australia는 소송에 앞서 비용 효율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지원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등록 가능한 권리 외에도, 호주는 「1968년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 Cth)」 등 관련 법률을 통해 문학, 예술, 음악, 소프트웨어 등의 창작물에 대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저작권 보호를 부여합니다. 아울러, 기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와 영업비밀(trade secrets) 역시 비밀유지의무 위반(breach of confidence) 및 계약상 의무에 대한 보통법 원칙에 따라 보호됩니다.

국제협약 | International Agreements

호주는 주요 국제 지식재산 협약의 당사국으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 등에 가입해 있습니다. 이들 협약은 국제 등록 절차의 통합을 지원하며, 기업이 여러 국가 및 관할권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은 호주의 지식재산법을 주요 선진국 수준과 일치시키고, 국제 무역 및 투자(cross-border trade and investment)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무 체크 리스트

설립 전 점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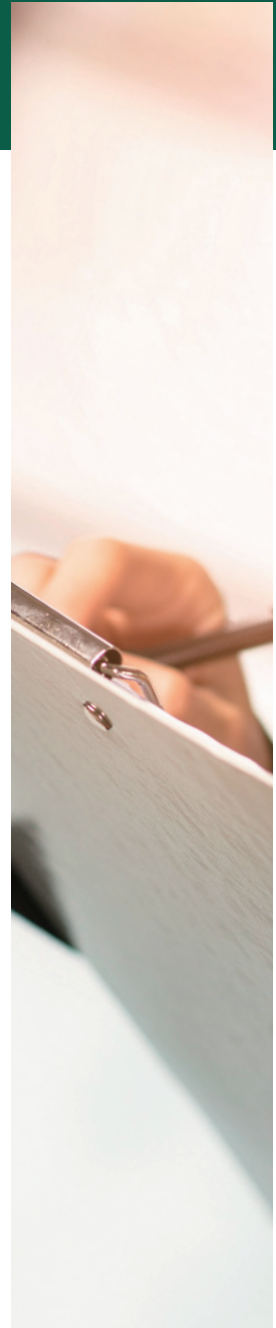
(Pre-Establishment Checklist)

- 적절한 사업 구조(자회사, 지점, 파트너십 등) 선택
- 사업 활동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 확인
- 계획된 투자가 외국인투자심의회(FIRB) 승인 대상인지 검토
- 세법상 거주지와 세무 구조를 분석하여 최적의 세금 효율 확보
- 주요 인력의 고용 및 비자 요건을 계획
- 사무실 또는 서비스 주소를 확보
- 모든 이사에 대해 이사 식별번호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DIN) 취득
- 회사 정관 및 주주간협약서(shareholders agreement) 준비
- 필요 시 상표·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
- 해당 산업별 규제 요건 검토

설립 후 준수 점검표

(Post-Incorporation Compliance Checklist)

- 호주국세청(ATO)에 사업자등록번호(ABN) 및 납세자번호(TFN) 등록
- 연 매출이 7만5천 호주달러를 초과할 경우 부가가치세(GST) 등록
-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원천징수세(PAYG Withholding) 등록
- 호주 내 사업용 은행 계좌 개설
- 해당 시 주(州) 급여세(Payroll Tax) 등록
-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가입
- 지정 서비스 제공업체인 경우 AUSTRAC 등록
- 산업안전보건(WHS) 정책 시행
- 공정근로법(Fair Work Act)에 부합하는 고용계약서 및 정책 준비
- 세무 및 기업 준수를 위한 기록 관리 체계 구축
- 호주 개인정보보호원칙(APPs)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 마련
- 필요 시 공공배상책임보험 및 전문가배상책임보험 등 사업보험 체결



연례 준수 일정표 (Annual Compliance Calendar)

시기	의무사항
10월 31일	회계연도 종료일이 6월 30일인 기업의 소득세 신고
1월 31일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인 기업의 ASIC 연례보고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3~4개월 이내	해당 시 재무제표를 ASIC에 제출
변경 후 28일 이내	이사, 등록사무소, 주식구조 변경사항을 ASIC에 신고
분기별	사업활동보고서(BAS) 제출 및 GST, PAYG 원천징수 · 분납 납부
분기별	직원 퇴직연금 (Superannuation Guarantee) 납부
월별 또는 분기별	급여세 신고(주별 요건에 따라 상이)
7월 14일	급여명세서 및 연간 PAYG 원천징수 보고서 제출
매년	산재보험 갱신
매년	고용계약, 인사정책, 산업안전보건(WHS) 절차 검토 및 갱신



규제 기관 안내 (Regulatory Authorities)

기관 (Agency)	주요 기능 (Function)	웹사이트 (Website)
ASIC	회사 등록 및 규제	asic.gov.au
ATO	세무 행정 및 관리	ato.gov.au
FIRB	외국인 투자 승인	firb.gov.au
Fair Work Ombudsman	고용법 집행 및 근로자 권리 보호	fairwork.gov.au
IP Australia	지식 재산권 등록	ipaustralia.gov.au
OAIC	개인정보 보호 규제	oaic.gov.au
ACCC	경쟁 및 소비자 보호법 집행	acc.gov.au
AUSTRAC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규제	austrac.gov.au
APRA	금융 서비스 및 보험업 규제	apra.gov.au
Department of Home Affairs	이민 및 비자 관리	homeaffairs.gov.au
Australian Border Force	세관 및 국경 보호	abf.gov.au
DFAT	무역, 외교 및 제재 관련 정책	dfat.gov.au

주(州)별 부동산 취득세율 (State Transfer Duty Rates, Approximate)

상업용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 취득세율은 주(州) 및 자산 가치에 따라 상당히 다르며,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주/ 준주 (State/Territory)	세율 범위 (Rate Range)
뉴사우스웨일스(NSW)	누진세율 약 4% ~ 5.5%
빅토리아(Victoria)	누진세율 약 5.5% ~ 6.5%
퀸즐랜드(Queensland)	누진세율 약 4.5% ~ 5.75%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	누진세율 약 4.95% ~ 5.5%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	누진세율 약 5% ~ 6%

참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외국인 구매자에 대해 약 7~8%의 추가 세금(Foreign Purchaser Surcharge Duty)이 적용됩니다. 세율과 기준은 정기적으로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는 각 주의 세무청(State Revenue Office)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of Key Terms)

- **AFSL** (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Licence):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면허
- **APPs** (Australian Privacy Principles):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13가지 원칙
- **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기업 규제 기관
- **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 연방 세무 행정 기관
- **BAS** (Business Activity Statement): 부가가치세(GST) 및 원천징수세(PAYG) 신고서
- **DIN**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이사 식별을 위한 고유 평생 번호
- **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외국인 투자 검토 기관
- **GST** (Goods and Services Tax): 10% 부가가치세
- **NES**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법정 근로 기준
- **PAYG** (Pay As You Go): 원천징수 및 분납 납세 제도
- **PPSR**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동산 담보권 등록 시스템
- **TFN** (Tax File Number): 납세자 식별을 위한 고유 번호



하야시 유키오

대표변호사



기업법무 및 상사 일반
인사 · 노무
기업 인수합병

- 최초의 일본인 호주 변호사
- Freehills (현 Herbert Smith Freehills Kramer)
- 파트너 변호사(전)
- 법학사, University of NSW

홍경일

대표변호사



기업 법무 및 상사 일반
소송 등 분쟁 해결
부동산 및 투자

- 국제 공증인
- 호주한인변호사 협회 회장
-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자문 변호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시드니무역관 및 멜번무역관 자문변호사
- 법학사, Bond University

김진한

대표변호사



기업 비자 등 이민
기업법무 및 상사 일반
인사 · 노무

- Fragomen 변호사(전)
-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자문 변호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시드니무역관 및 멜번무역관 자문변호사
- 법학사, The University of Auckland

틴록 시어

파트너변호사



조세
기업법무 및 상사 일반
기업 인수합병

- Jurisdictional Council Member, Australia, Inter-Pacific Bar Association
- Deloitte 회계법인(전)
- Australia-Japan Society of NSW 임원
- 법학사, University of NSW

티모시 첸

파트너변호사



분쟁 해결 및 소송
기업법무 및 상사 일반

- HWL Ebsworth Lawyers 선임 변호사(전)
- 법학사, University of NSW

정태문

선임변호사



은행 등 금융시장 규제
기업지배구조
ESG 대응

- 호주 College of Law 국제법무 이사
- 호주 및 뉴질랜드 College of Law, 뉴질랜드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겸임강사
-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부협회장
- 세계한인법률가회 (IAKL) 임원
- 법학사 및 법학 석사, University of Auckland

손 맥구션

선임변호사



프로젝트 파이낸스
인프라 개발
기업법무 및 상사 일반

- Ash Street Partners 이사
- Corrs Chambers Westgarth 파트너 변호사(전)
- Freehills (현 Herbert Smith Freehills Kramer) 파트너 변호사(전)
- 경영전문석사(MBA), The University of Sydney
- 법학사, The University of Tasmania

피터 쇼

선임변호사



기업 인수합병
자본시장
기업법무 및 상사 일반

- Ash Street Partners 이사
- Clayton Utz 파트너 변호사(전)
- Maddocks 파트너 변호사(전)
- 경영전문석사(MBA), Australian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University of NSW
- 법학사, The University of Sydney

레이코 레이놀즈

선임변호사



부동산 및 투자
기업법무 및 상사 일반

- Graduate Diploma in Legal Practice - College of Law
- Property Practice (Real Estate: Sales/Property Management), UNE Partnerships
- 법학사, University of New England
- Associate Degree in Arts/Music (Hons), Glendale College(미국)
- 인문학사, Waseda University(일본)

정은미박사

선임변호사



Healthcare
& Pharmaceutical
Commercial & Corporate

- JD (Juris Doctor), University of Melbourne
- Doctor of Philosophy (PhD), Neuroscience, University of Auckland
- Bachelor of Science Honours (1st Class), University of Auckland
- Bachelor of Science, University of Auckland

폴 고빈드 박사

선임변호사



ESG
Commercial & Corporate

- Deputy Director, Centre for Environmental Law, Macquarie University
- Regional Director (Pacific), Global Network for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 Board Member, National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 Doctorate in Law, Macquarie University
- Master of Philosophy/Master of Laws (Hons), The University of Sydney
- Bachelor of Laws (Hons), Macquarie University

우에다 다이스케

변호사



인사 · 노무
기업법무 및 상사 일반

- 법학전문석사(J.D.), University of NSW
- 상경학사, Macquarie University

니콜라스 림

변호사

Banking &
Financial Services

- Formerly Senior Manager (Compliance), Westpac
- Legal Practitioner, Supreme Court of New South Wales
- Barrister and Solicitor of the High Court of New Zealand
-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
- Bachelor of Laws, University of Auckland
- Bachelor of Commerce (Accounting), University of Auckland



조옥아

한국 변호사

기업 법무 및 상사 일반
소송 등 분쟁해결
한국법 자문

- 법무부 국제법무지원단 자문위원
- 51회 사법시험
- 법학석사(LL.M), Macquarie University
- 법학사, 이화여자대학교



이안 허친슨

고문 변호사

Commercial & Corporate
Workplace & Employment

- Professional non-executive company director
- Formerly Chairman and Senior Partner of Freehills (now Herbert Smith Freehills Kramer)
- Formerly Chairman and President of the Global Innovation Foundation in New York



데니스 윌슨

고문 변호사

Commercial & Corporate
Dispute Resolution & Litigation

- Formerly Barrister, Wardell Chambers
- Accredited Arbitrator and Mediator
- Adjunct Professor, Notre Dame University (Sydney)
- Graduate Diploma of Law, The University of Sydney
- Graduate Diploma of Criminology, The University of Sydney
- Master of Laws (LLM), The University of Sydney Law School
-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 Murdoch University



마틴 폴레인

고문 변호사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mercial & Corporate

- BA (hons.) in History, University of Manchester
- Diploma in Law, The City University
- Barrister (England & Wales) and Arbitrator
- LL.M (Public International Law), Concordia College
- US Constitutional Law, Yale University
- International Criminal Law,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제니 버큰 박사

고문 변호사

Commercial & Corporate
(Franchise Law)

- Professor Emeritus,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Bachelor of Laws, Otago University
- Master of Laws, University of Melbourne
- PhD,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We focus on providing practical, effective and innovative advice and solutions, bearing our clients' needs at the core of our services.

Key Contacts

주요 연락처



홍경일

Kenneth Hong

대표변호사

E : ken.hong@hhlaw.com.au

T : +61 2 9169 3775

M : +61 403 880 551



김진한

John Kim

대표변호사

E : john.kim@hhlaw.com.au

T : +61 2 9169 3752

SYDNEY

LEVEL 5, 32 MARTIN PLACE,
SYDNEY NSW 2000
AUSTRALIA

MELBOURNE

LEVEL 6, NORTH TOWER
80 COLLINS STREET,
MELBOURNE VIC 3000
AUSTRALIA

www.hhlaw.com.au

H&H
Lawyers